



독일 연방정보보호법(1)

I. 들어가며

최근 개인정보보호는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로 개인정보의 다량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그 피해규모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체계는 크게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규율되고 있는데,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사회의 개인정보 즉, 공공 부문에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경우는 금융, 신용, 의료, 교육 분야 등에서 각각 개별적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

그런데 이러한 이원화 된 법 적용으로 인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

하여 명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재 공공 부문과 비공공 부문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²⁾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독일은 이미 민간, 공공 부문을 하나의 법으로 규율하는 통합시스템을 제도화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법이 바로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으로 이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법제 정비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연방정보보호법의 입법과정과 구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II. 입법과정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은 1990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2001년, 2003년, 2006년에 개정되었는데,

*** -----

1) 1995년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비롯해 여러 개별적인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조항이 삽입되었다. 이후에 1999년에 기존의 ‘전산망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이름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다. 이를 2001년에 다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이 법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2) 이는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사이에 대해 개별 법률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사회 전 분야에 포괄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공공 및 민간 분야 전체에의 포괄 적용, 개인정보주체의 권



이러한 개정은 EU 회원국이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에³⁾ 적합하도록 자국 내의 관련 입법을 정비하도록 한 데에 따른 것이다.⁴⁾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집행력을 가진 것으로 회원국은 자국 내의 법률 및 제도를 동 지침에 맞도록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2001년의 개정내용은 EU의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동 법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공공 부문과 비공공 부문을 통합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한 기구로써 연방 정보보호수탁자(정보보호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연방정보보호법 외에도 각 주에서 EU 지침에 따른 정보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III. 연방정보보호법의 구성

연방정보보호법의 구성은 크게 6장, 46개 조문 및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일반 및 공

통규정(제1조 내지 제11조), 제2장은 공공 부문의 정보공개(제12조 내지 제26조), 제3장은 비공공 부문에서의 정보공개(제27조 내지 제38a조)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특별규정을(제39조 내지 제42조), 제5장에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한 제재와 관련한 규정을(제43조 내지 제44조), 마지막 제6장에서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제45조 내지 제46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장 : 일반 및 공통 규정(Allgemeine und gemeinsame Bestimmungen)⁵⁾

제1조	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Zweck und Anwendungsbereich des Gesetzes)
제2조	공공 및 비공공부문(Oeffentlich und nicht-oeffentliche Stellen)
제3조	그 밖의 개념 규정>Weitere Begriffsbestimmung)

*** -----

리 규정, 원활한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기구의 신설,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자 이용의 제한, 가칭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도입 등이다.

- 3) EU는 회원국 간의 원활한 정보유통과 역외에서 EU 소속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지침(EU Directive 95/46/EC)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1995.10.제정 / 1998.10.시행). 이 지침에는, ①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② 국가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경우 개인정보보호기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③ 각각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는 조사권, 효과적 중재권 및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④ 타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와 EU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협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4) 독일은 1999년 12월 EC조약 위반으로 집행위원회에 의해 EU재판소에 제소되었으나, 2001년에 법개정을 통해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소가 취하된 바 있다.
- 5) 동 법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Stelle: 부문, Bertoffener: 관련 당사자, Daten: 정보, Erhebung: 수집, Verarbeitung: 가공, Nutzung: 이용, Uebermittlung: 전달, Speichern: 저장, Sperren: 폐쇄, Loeschung: 삭제, Beauftragter: 수탁자.

제3a조	정보의 회피 및 정보의 최소화(Datenvermeidung und Datensparsamkeit)
제 4 조	정보의 수집, 가공 및 이용의 허용(Zulaessigkeit der Datenerhebung, -verarbeitung und -nutzung)
제4a조	동 의(Einwilligung)
제4b조	국가 간의 부문에서처럼 외국에로의 개인관련 정보의 전달(Ue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Daten ins Ausland sowie ueber- oder zwischenstaatliche Stellen)
제4c조	예 외(Ausnahmen)
제4d조	고지의무(Meldepflicht)
제4e조	고지의무의 내용(Inhalt der Meldepflicht)
제4f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Beauftragter fuer den Datenschutz)
제4g조	정보보호를 위한 수탁자의 임무(Aufgaben des 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제 5 조	정보비밀(Datengeheimnis)
제 6 조	관련 당사자의 절대적인 권리(Unabdingbare Rechte des Betroffenen)
제6a조	자동화된 개별 결정(Automatisierte Einzelentscheidung)
제6b조	광학적 전자적 시설을 갖춘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공간의 관찰(Beobachtung oeffentlich zugaeuglicher Raeume mit optisch-elektronischen Einrichtungen)
제6c조	이동성 개인관련 정보의 저장 및 가공매개체 (Mobile personenbe- zogene Speicher- und Verarbeitungsmedien)
제 7 조	손해배상(Schadensersatz)

제 8 조	공공부문에 의한 자동화된 정보가공에서의 손해배상(Schadensersatz bei automatisierter Datenverarbeitung durch oeffentliche Stellen)
제 9 조	기술적인 그리고 관리상의 조치(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Massnahmen)
제9a조	정보보호 심리절차(Datenschutzaudit)
제10조	자동화된 회수절차의 실행(Einrichtung automatisierter Abrufverfahren)
제11조	위임된 개인 관련 정보의 수집, 가공 및 이용 (Erhebung, Verarbeitung der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im Auftrag)

2. 제 2 장: 공공부문에서의 정보가공(Datenverarbeitung der oeffentlichen Stellen)

(1) 제 1 절: 정보가공의 법적 기초(Rechtsgrundlagen der Datenverarbeitung)

제12조	적용범위(Anwendungsbereich)
제13조	정보수집(Datenerhebung)
제14조	정보의 저장, 변경 및 이용(Datenspeicherung, -veraenderung und -nutzung)
제15조	공공부문으로의 정보전달(Datenuebermittlung an oeffentliche Stellen)
제16조	비공공부문으로의 정보전달(Datenuebermittlung an nichtoeffentliche Stellen)
제17조	(삭 제)
제18조	연방행정기구에서의 정보보호의 실천(Durchfuehrung des Datenschutzes in der Bundesverwaltung)



(2) 제 2 절: 관련 당사자의 권리(Rechte des Betroffenen)

제19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Auskunft an den Betroffenen)
제19a조	통 지(Benachrichtigung)
제20조	정보의 수정, 삭제 및 폐쇄; 이의권(Berichtigung, Loeschung und Sperrung von Daten; Widerspruchsrecht)
제21조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호출(Anrufung des 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3) 제 3 절: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Bundesbeauftragter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제22조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선임(Wahl des 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제23조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법적 지위(Rechtsstellung des 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제24조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에 의한 통제(Kontrolle durch den 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제25조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를 통한 이의제기(Beanstandungen durch den 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제26조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수탁자의 그 밖의 임무>Weitere Aufgaben des 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	---

3. 제 3 장: 비공공부문 및 행정법상의 경쟁기업의 정보가공(Datenverarbeitung nicht-oeffentlicher Stellen und oeffentlich-rechtlicher Wettbewerbsunternehmen)

(1) 제 1 절: 정보가공의 법적 기초(Rechtsgrundlagen der Datenverarbeitung)

제27조	적용영역(Anwendungsbereich)
제28조	고유목적을 위한 정보수집, 정보가공 및 정보이용(Datenerhebung, -verarbeitung und -nutzung fuer eigene Zwecke)
제29조	전달을 목적으로 한 영업에 적합한 정보수집 및 정보저장(Geschaeftsmassige Datenerhebung und -speicherung zum Zwecke der Uebermittlung)
제30조	익명화 된 형태로 전달할 목적으로 업무에 부합하는 정보수집 및 정보 저장(Geschaeftsmassige Datenerhebung und -speicherung zum Zwecke der Uebermittlung in anonymisierter Form)
제31조	특별한 목적 구속(Besondere Zweckbindung)
제32조	(삭 제)

(2) 제 2 절: 관련 당사자의 권리(Rechte des Betroffenen)

제33조	관련 당사자의 통지(Benachrichtigung des Betroffenen)
제34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Auskunft an den Betroffenen)
제35조	정보의 수정, 삭제 그리고 폐쇄(Berichtigung, Löschung und Sperrung von Daten)

(3) 제 3 절: 감독관청(Aufsichtsbehörde)

제36조 제37조	(삭 제)
제38조	감독관청(Aufsichtsbehörde)
제38a조	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의 이행의 촉진을 위한 행위규칙(Verhaltensregeln zur Foerderung der Durchfuehrung datenschutzrechtlicher Regelungen)

4. 제 4 장: 특별규정(Sondervorschriften)

제39조	직업 또는 특별한 직무상 비밀에 관련된 개인관련 정보의 목적구속(Zweckbindung bei personenbezogenen Daten, die einem Berufs- oder besonderen Amtsgeheimnis unterliegen)
제40조	연구시설을 통한 개인 관련 정보의 가공과 이용(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durch Forschungseinrichtungen)
제41조	매개체를 통한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 가공 및 이용(Erhebung,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onenbezogener Daten durch die Medien)
제42조	독일변혁기의 정보보호 수탁자(Datenschutzbeauftragter der deutschen Welle)

5. 제 5 장: 종결규정(Schlussvorschriften)

제43조	벌칙규정(Bussgeldvorschriften)
제44조	형벌규정(Strafvorschriften)

6. 제 6 장: 경과규정(Uebergangsvorschriften)

제45조	지속적인 이용(Laufende Verwendungen)
제46조	개념규정의 계속 적용(Weitergeltung von Begriffsbestimmungen)

이번 호에서는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 입법과정과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연방정보 보호법리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류 승 훈

(선문대 법대 교수)